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Reform to Fully Guarantee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in Juvenile Detention Centers

강태경 · 유진

KICJ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강 태 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 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김 지 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넬슨 만델라의 말을 빌자면, 한 국가의 인권 수준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을 대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런 관점에서 소년원에 구금되어 자유가 박탈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이 얼마나 충분히 보장되느냐는,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년원에 초·중등 교과교육이 개설된 지 65여 년이 흘렀고, 1988년 소년원법 개정을 통해 정규학교로서의 소년원학교가 개교한 지 이미 35여 년이 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구금된 보호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더디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노력은 구금되어 자유가 박탈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에 대한 실천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운영의 현실을 살펴보면, 보호소년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기에는 소년원학교의 제도적·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이에 연구진은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소년원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미흡함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소년원학교 교사, 직원, 법무부 소년보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현재의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사범 및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활용, 기초학력교육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짧은 연구 기간과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뿐만 아니라 심층 면담에 흔쾌히 응해주신 여러 관계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민을 함께 해주셔서 연구를 수월하게

vi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수행할 수 있었다. 부디 이 연구가 보호소년의 학습권을 더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년 1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강 태 경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강태경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내용 8

제2장 강태경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11

제1절 소년원 교과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13

1. 국내 선행연구 검토 14

2. 해외 선행연구 검토 16

제2절 규범적 근거 검토 19

1. 국제규범 20

2. 국내규범 23

3. 소년원 학생 학습권 관련 국내 법령 등의 문제점 31

제3절 소년원 학생 학습권 관련 외국 입법례 32

1. 미국 32

2. 캐나다 34

3. 유럽 연합 35

제4절 소결 37

제3장 유진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 현황 39

제1절 소년원학교 운영 현황 41	41
1.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관 41	41
2. 소년원학교 학생 현황 42	42
3. 교원 인력 현황 46	46
제2절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 48	48
1. 교육과정 운영 현황 48	48
2. 보통교과수업 운영 현황 49	49
3. 기초학력교육 현황 51	51
제3절 소결 - 개선 필요 사항 진단 52	52
1. 소년원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미비 52	52
2. 교사 인력 부족 55	55
3. 교육부·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미흡 58	58

제4장 강태경·유진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1

제1절 정책 환경 분석 63	63
제2절 관계 법령 개정안 66	66
제3절 제도 개선 방안 69	69
1. 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활용 69	69
2. 기초학력교육 운영 개선 75	75

참고문헌 79

Abstract 83



표 차례

[표 2-1-1] 국내 선행연구	14
[표 2-1-2] 외국 선행연구	17
[표 2-4-1] 소년사범 교육에 관한 국내외 법률 등 비교	38
[표 3-1-1] 소년원 교과교육과정 일일 수용인원(2023)	42
[표 3-1-2] 소년원학교 재학생 현황(2023. 11. 28. 기준)	43
[표 3-1-3] 소년원학교 교사 현황(2023)	46
[표 3-2-1] 송천중고등학교 수업시수 배정(2024)	49
[표 4-1-1]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 분석	63
[표 4-2-1] 초·중등교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66
[표 4-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68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필요성

-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근본적인 권리
-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의무교육 제공에 역부족인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필요

○ 연구목적

- 소년원학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충과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실질적 협력을 목표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소년원학교 학생 학습권 관련 선행연구 및 규범적 근거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규범 검토
- 미국 및 캐나다 입법례 검토

○ (심층면담) 소년원학교 교사 및 직원, 법무부 소년보호과 소속 공무원 대상 심층 면담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운영 현황 검토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내실화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점 파악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물적·인적 자원 검토

2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소년원학교 학생 학습권에 관한 정책 환경 분석 결과

강점 : Strength	약점 :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 임용으로 교과교육 역량 강화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의 교사로서의 높은 소명의식 ■ 법무부,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중 '소년원생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정책과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지원에 관해 소년사법 관계 법령과 교육 관계 법령 간 큰 간극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교원 인력 및 교과교육 예산 부족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에 대한 소년원생의 낮은 의욕 및 만족도
기회 : Opportunity	위험 :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대 국회,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호소년법 개정안 발의 ■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중 '소년원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포함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학교, 소년원학교 학생 학적 관리 및 복적 등에 비협조 ■ 교육부,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을 소관 업무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데 소극 ■ 관계 부처 및 기관,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충에 소극 ■ 최근 불거진 소년 강력범 등에 대한 보도 등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 확대

□ 정책 제언

○ 소년사법 및 교육 관계 법령 개정안

- '초·중등교육법'에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 보호소년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 신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보장 원칙, 소년원 학교 교육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 등 신설

- 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활용
 - 각 소년원학교의 과목별 전담 교사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전문경력관 교사 추가 채용하여 교과교육 내실화
 - 수용보호 관련 업무와 교과교육 업무 분리 및 교원 직무연수 제공을 통해 전문경력관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활용
- 기초학력교육 운영 개선
 -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 방법의 개선 및 정확한 평가방법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교육 효과성 평가
 - 소규모 학습지원교육반 편성함으로써 개별 학생의 학습지원 필요 파악 및 맞춤형 교육 제공

제 1 장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서론

강태경

제1절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화)는 2021년 2월 17일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권고안(제6차 권고)을 발표했다.¹⁾ 이 발표에서는 헌법 제31조의 원칙에 따라 “학령기의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외명칭을 ‘학교’라 쓰고 있는 “대부분의 소년원이 인가된 학교가 아니며, ‘일반적인 정규’ 교육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권고의 배경으로 언급되었다. 위원회는 ① 소년보호 활동에 모든 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기관의 학업 연계 방안 마련’, ② 소년원생 등의 교육이 정규 학교로 인가받은 소년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의 책임 강화’, ③ 소년원생 등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소년보호기관 교육 방식 다양화’를 권고하였다.

한편 2023년 4월 6일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²⁾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원과 교육 기자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이

1) 이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6차 권고에 관한 내용은, 법무부,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 및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권고”(2021. 2. 17.자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따왔다.

2)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0) 의안 원문(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A3Y0F4E0D3L1G0N5M9L1J9S8R5Q9, 최종접속일 2023. 12. 15.).

8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원학교 '교과교육'³⁾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소년원학교에서는 일반 학교 수준의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소년원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교 학생들처럼 학적 관리를 받으며, 소년원을 출원한 이후에는 전적학교로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원 재원 기간 동안 일반 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체계도 미비한 상태이다.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부처 간 협업 체계 마련을 통해 소년원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학교의 교육 역량 강화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출원 후의 원활한 학업 복귀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법적, 제도적 틀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다.

제2절 |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국내외 규범을 검토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학습권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소년법 및 보호소년법의 학습권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외 법률 체계와

3) 소년원에서 제공되는 주된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그리고 '인성교육'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학적을 유지한 채 입원하는 9호 및 10호 처분 소년에게 제공되는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둘째, 소년원 교육 환경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검토한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초·중등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분석하고, 현재 소년원학교 교육 환경의 한계를 식별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한다.

셋째, 소년원학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업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장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강 태 경

제2장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제1절 | 소년원 교과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비행 청소년들에게서 '낮은 학업성취, 잦은 전학, 낮은 학교 애착도, 퇴학과 정학, 학업 중단'과 같은 학교 관련 영향요인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⁴⁾ 이에 학교교육과 학교출석은 청소년의 정상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이며, 비행이나 소년사범에 연루되는 것을 막아주는 요인으로 기능한다.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년원에서의 학교교육은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상당히 중요하다.⁶⁾ 미국 소년원에서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소년원에서의 학교교육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재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범의 낮은 학업성취나 낮은 기초학력과 소년원 관련 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년원에서의 학교교육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래에서는 소년원에서의 학교교육의 한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4) 박선영(2021), 『소년원생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 연구 -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40면.

5) Development Services Group, Inc. (2015), "Protective Factors Against Delinquency," *Literature review*.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Protective%20Factors.pdf>, 최종접속일 2023. 11. 15.).

6) Development Services Group, Inc. (2019), "Education for Youth Under Formal Supervis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Literature review*.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ttps://ojjdp.ojp.gov/model-programs-guide/literature-reviews/education_for_youth_under_formal_supervision_of_the_juvenile_justice_system.pdf, 최종접속일 2023. 11. 15.).

7) M.W. Lipsey, J.C. Howell, M.R. Kelly, G. Chapman, and D. Carver (2010),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Justice Programs*, Center for Juvenile Justice Reform at Georgetown University.

1. 국내 선행연구 검토

소년원 교과교육 관련 국내 연구과 그 주요 내용은 [표 2-1-1]에 정리하였다. 소년원 교과교육 관련 국내 연구는 대체로 소년사범의 특성보다는 소년원이라는 기관과 그 운영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최영신(2002), 김호중(2004), 황인국(2005), 한양선(2015)의 연구를 종합하면, 소년원 교육의 문제점은 직업훈련에 편중되어 있어 소년원생을 학교교육에서 소외시키고 기초학력 부실을 야기한다는 점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일반 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정규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의 확대이다. 한편 정희철(2013)은 소년원의 교과교육은 준법생활을 목표로 하는 소년법의 교육과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선영(2021)과 이나현(2021)의 연구에서는,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운영에 있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법무부와 교육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전문교사 인력 확충과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제시되었다.

▶▶▶ [표 2-1-1] 국내 선행연구

순번	연도	저자	제목	주요내용
1	2003	최영신	소년원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학교 중 특성화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 기능위주의 교육의 문제점(기초교육 부실) • 보통교과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 •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에 시사점 제공
2	2004	김호중	특성화 학교 체제도입 전후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화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소외계층인 소년원생에게 학교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함 • 대안학교과 비교할 때, 소년원은 지나치게 기능위주 교육(1980년대 산업화 맥락) • 소년원 졸업자의 대학 진학을 높아지고 있는 데 맞춰 교과교육 강화 필요 • 소년법, 보호소년법, 교육기본법에서 목표로 삼는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함 • 중학교 교과과정은 기초교육 중심,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인성교육 강화 방안 제시
3	2005	황인국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이 직업 중심 특성화로 구성되어 있어, 소년원생의 필요와 관심을 반영하기보

순번	연도	저자	제목	주요내용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는 사회적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교과를 특성화하고 있음 가시적 실적 위주 운영으로 소년원생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 교육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지적
4	2013	정희철	소년법의 소년보호이념으로서 교육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보호원칙 중 하나인 '교육주의'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제반 소년법상의 제재 및 처분이 교육에 지향되어야" 함을 의미 소년법의 교육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일상적 교육과는 차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준법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가치의 내면화를 통한 자기교육을 위한 타율적 교육"으로 요약됨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은 준법생활을 목표로 하는 소년법의 교육과 구별됨
5	2015	한양선	보호소년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2000.8.)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소년원을 특성화 학교체제로 전환 2006년부터 법무부 훈령 제539호에 따라 소년원 학교 교육과정이 법에 따라 적용 특성화 교과 및 기술교육 위주의 교과 편성·운영은 보호소년의 퇴원 후 기초학력 부실을 초래하여 학업 중단과 사회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음 보호소년 교육은 교정으로서의 접근보다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교화로서의 접근이 필요
7	2021	박선영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원 학생과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교육, 아동청소년, 비행 등 전문가 자문 전문교사 부족, 교육 예산 부족, 시설 부족, 교육부 협조 부족 등이 지적됨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개선방안으로는, ① 초중등 교육법 개정, ② 법무부·교육부의 협업 및 협력체계 구축, ③ 전문교사 인력 확충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④ 민간 교육기관 위탁, ⑤ 소년원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조사 강화 등이 제시됨
6	2021	이나현	소년원 교과교육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원 학생과 교사 대상 FGI 실시 학습자 측면에서, 교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해당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 교수자 측면에서, 전문교사 부족, 빈번한 인사이동,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 있음 개선방안으로는, ① 법무부·교육부의 연계, ② 전문교사 인력 확충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③ 실습 및 체험 수업 개설, ④ 학생들의 수업평가

2. 해외 선행연구 검토

소년원 교과교육 관련 해외 선행연구와 그 주요 내용은 [표 2-1-2]에 정리하였다. 앞서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가 소년원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선행연구는 소년원 교과교육의 또 다른 한계 요인인 낮은 기초학력 등과 같은 소년사범의 특성과 소년원 교과교육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소년사범의 학습 능력 측면을 다룬 Zabel과 Nigro(2001; 2007), Chitsabesan 등(2007) 그리고 Cruise 등(2011)의 연구를 종합하면, 소년 구금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의 경우 낮은 지능과 학습장애로 학습에서 문제를 겪는 비율이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고, 읽기·쓰기·수학 등 기초학력 영역에서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성취도를 보인다. 한편 Chung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소년사범이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기보다는 소년사범이 처했던 환경에서 교육 기회가 얼마나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 이는 소년사범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Greenwood(2008), Vacca(2008), Williams(2008), Davis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소년사범의 부정적인 학습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범에 대한 기초학력 증진 교육과 교과교육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학교 프로그램은 약물 남용, 비행, 반사회적 행위, 학업중단 등을 방지하고, 읽기 능력의 증진은 출원 후 학교로의 성공적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예술 프로그램 참여는 소년사범이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수단을 통해 표현하고 해소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Davis 등(2014)은 소년보호시설 내 검정고시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소년범이 구금 중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취득한 한 경우 3년 내 재수감률이 낮아진다는 제한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Sullivan(2018)의 연구는 기존의 여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시설에서의 교육이 재범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수감 비용도 낮춘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결론의 주요한 근거로 인용된 미국 소년사범연합(The 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의 200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평균 소년범의 재범률은 60~84%로 추정되는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한 소년범의 경우 재범률이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⁸⁾ 구금시설 내 교육 효과의 또 다른 주요한 근거로 인용되는 2013년도 RAND 보고서에서는 교정시설 내 교육 효과를 조사한 50개의 선행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⁹⁾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 수형자가 교도소 내 학업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재범률을 43% 이상 감소시켰고, 3년 내 재수감률을 12.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⁰⁾ 또한 100명의 수형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은 14만~17.4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구금시설 내 교육으로 인한 3년 내 재수감률 감소 추정치를 고려하면 3년 내 절약되는 수감 비용은 87만~97만 달러로 추정되었다.¹¹⁾ 다시 말해, “구금시설 내 교육에 대한 1달러 투자가 석방 후 처음 3년 동안 수감 비용을 4달러에서 5달러까지 줄였다.”¹²⁾

▶▶ [표 2-1-2] 외국 선행연구

순번	연도	저자	제목	주요내용
1	2001	Zabel Nigro	The influence of special education experience and gender of juvenile offenders on academic achievement scores in reading, language, and mathema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구금 시설에 수감된 대규모 청소년 집단의 학업 결손 유형과 정도 조사, 읽기, 언어, 수학의 세 가지 주요 학업 영역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기준에서 학업 성취도의 차이 확인 ① 세 영역 모두에서 대부분의 참가자의 성취도 점수가 자신의 학년 수준보다 낮았고, ② 특수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른 청소년 범죄자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③ 남성 소년범이 여성 소년범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음
2	2007	Chitsabesan	Learning disabilities 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 소년구금 시설 내 청소년 5명 중 1명(20%)은 정신지체(IQ 70 미만)에 해당

8) 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01), *Annual Report: Abandoned in the Back Row: New Lessons in Education and Delinquency Prevention (Overview)*, p.3 (https://www.njjn.org/uploads/digital-library/resource_118.pdf, 최종접속일, 2024. 1. 29.).

9) L. M. Davis et al. (2013),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education: A meta-analysis of programs that provide education to incarcerated adults*, RAND Corporation. 이 연구의 초점은 구금된 성인에 대한 교정시설 내 교육의 효과 분석에 맞춰져 있다.

10) Ibid., p. 39.

11) Ibid., p. 40.

12) RAND Corporation(2013),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Prisons Reduces Recidivism, Improves Job Outlook”(https://www.rand.org/news/pres/2013/08/22.html, 최종접속일 2024. 1. 29.).

18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순번	연도	저자	제목	주요내용
		et al.	educational needs of juvenile offenders	<p>하고(ICD-10), 읽기(52%)와 독해(61%)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흔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소년범의 경우 언어적 IQ 점수가 수행적 IQ 점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3	2007	Zabel Nigro	Occupational interests and aptitudes of juvenile offen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범, 특히 장애를 가진 소년범은 학교 부적응과 교육, 취업, 사회적 기회의 감소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부적응을 지속할 위험이 높음 특수 교육 그룹은 비특수 교육 그룹에 비해 식물과 동물을 다루는 직업을 선호했고, 일반 적성, 언어 적성, 수리 적성 측정 점수는 현저히 낮았음
4	2008	Greenwoo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juvenile offen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증거 있음 학교 프로그램은 약물 남용, 비행, 반사회적 행위, 학업중단 등을 방지
5	2008	Vacca	Crime can be prevented if schools teach juvenile offenders to re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 학습은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학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 구금된 소년범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 독서 성취도는 재범률과 관련성 있음
6	2008	Williams	The status and praxis of arts education and juvenile offend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교정기관 중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25% 미만(예산 부족, 학생 수 많다는 문제점 있음) 예술 프로그램 참여자는 예술 프로그램이 분노, 두려움, 후회를 표현하는 긍정적 수단이라고 여기고, 스트레스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여김 예술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그림, 글쓰기, 랩, 춤 등을 통해서 기술에 기초한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7	2011	Chung et al.	Understanding the school outcomes of juvenile offe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범 833명(특정한 두 지역의 백인, 흑인, 히스패닉 소년범)의 학업 능력 조사(다단계 경로 분석) 부유한 지역의 소년범의 경우 교육 및 취업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고, 더 나은 성적을 보임
8	2011	Cruise et al.	Integrating mental health and special education needs into comprehensive service planning for juvenile offenders in long-term custody sett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기관에 수감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습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비율이 높음 장기구금 청소년 중 입소 시 특수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한 결과 학습장애율이 39.8%

순번	연도	저자	제목	주요내용
9	2014	Davis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Incarcerated Juveni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보호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중 읽기 교육 프로그램인 Read180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Read180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읽기 능력 향상시키고 퇴원 후 학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소년보호시설 내에서 개별화된 검정고시(GED Test)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검정고시 참여 소년범의 경우 3년 내 재수감률이 낮았음
9	2018	Sullivan	Education systems in juvenile detention c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소년범은 학습기술이 부족한 채로 소년보호 시설에 입소하고 종종 학습장애를 겪음 • 소년보호시설에서의 교육은 재범률을 낮추고, 수감 비용도 낮춤 • 소년보호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은 주마다 다름 • 미연방헌법은 소년보호시설 내 교육 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제2절 | 규범적 근거 검토

모든 개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국제 규범과 각국의 헌법과 법령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는 생명권, 자유권,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과 함께 교육권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이후 1985년 유네스코(UNESCO)는 “모든 사람이 읽고 쓸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권리, 상상하고 창작할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쓸 권리, 교육 자원에 접근할 권리, 개인 및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학습권(Right to Learn)’을 선언하였다.¹³⁾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습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권은 자유로운 시민뿐만 아니라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¹⁴⁾ 이 절에서는 소년원생의 학습권에 관한 규범적 근거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13) 임현묵·박환보(2018), 한국사회와 지속가능 발전목표 4: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유네스코한국위원회), 85면(<https://www.gcedclearinghouse.org/sites/default/files/resources/190080kor.pdf>, 최종접속일 2023. 12. 15.).

14) 유주영·강대중(2019), “판결문을 통해 본 수용자 학습권 분석”, 『교정연구』, 29(4), 131-156.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을 검토한다.

1. 국제규범

가. 아동권리협약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등 42개의 실제적인 아동권리를 담고 있다. 이 협약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196개국(2021년 1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교육받을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교육에 관한 권리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강조-필자 추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협약의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a) 가장 취약한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할당해야 하고, (b) 양질의 교육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의 질이 감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다고 밝힌 바 있다.¹⁵⁾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취약 집단에 대한 교육지원, 학교 밖 및 대안학교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¹⁶⁾ 이러한 권고는 소년원 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¹⁷⁾ 또한 위원회는 구금시설은 구금된 아동에 대해 피구금소년 처우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처우에는 교육에 대한 접근도 포함된다.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 조건이, 개인 공간,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에 대한 소년·소년의 동등한 접근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¹⁸⁾

나. 소년사법 관계 규칙

1) 유엔 소년사법운영 최소표준규칙

일명 베이징 규칙(The Beijing Rules)이라 불리는 ‘유엔 소년사법운영 최소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1985)(A/RES/40/33)은 제1조 제2항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청소년이 일탈 행동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하고,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로운 개인 개발 및 교육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15) CRC/C/15/Add.225, Concluding observations on second report of Armenia (26 February 2004), para. 55. 해당 문서는 아르메니아가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다.

16) CRC/C/KOR/CO/5-6: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24 October, 2019)

17) 박선영, 앞의 보고서, 35면.

18) CRC/C/KOR/CO/5-6, para. 47 (h).

22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칙은 구금 여부에 상관 없이 소년사법 절차에 연루된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면서 '교육'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규칙은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이 교육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과 부서들이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3.5 청소년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나이, 성별 및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의료적 및 신체적 보살핌과 보호 및 모든 필요한 개별 지원을 받아야 한다.

24.1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에게 숙식, 교육 또는 직업 훈련, 고용 또는 기타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지원과 같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재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파트 5

시설 내 처우

26. 시설 내 처우의 목적

26.1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의 훈련 및 처우의 목적은 사회 안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돌봄, 보호, 교육 및 직업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26.2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은 나이, 성별, 성격에 따라 그리고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의료적, 신체적 보살핌과 보호 및 모든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26.6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이 교육적 불이익을 받고 시설을 떠나지 않도록 적절한 학업 또는 적절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및 부서 간 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강조-필자 추가)

2) 유엔 피구금소년보호규칙

일명 하바나 규칙(Habana Rules)이라 불리는 '유엔 피구금소년보호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1990)(U.N.Doc.A/45/113)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의 학습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해 피구금소년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구금시설에 부과하고 있다. 또한 졸업장이나 교육 증명서에 구금시설 수용 사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구금소년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고 있다.

E. 교육, 직업 훈련 및 업무

38.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적합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가능하면 구금시설 밖의 지역사회 학교에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통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석방 후에도 어려움 없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금 시설의 관리자는 외국 출신 또는 특정 문화적 또는 민족적 요구가 있는 청소년의 교육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맹이거나 인지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특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39. 의무 취학 연령 이상의 청소년이 교육을 계속 받기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장려해야 하며,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0. 구금 중인 청소년에게 수여되는 졸업장이나 교육 증명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당 청소년이 구금시설에 있었던 것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41. 모든 구금시설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용 및 오락용 도서와 정기 간행물이 적절히 구비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청소년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강조-필자 추가)

2. 국내규범

가. 교육 관계 법령 등

1) 교육기본법

교육과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은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회 균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조는 교육 기회 균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언의 해석상 소년원생도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학습권의 주체이며,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에 포함된다고 봄이 당연하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2조는 의무교육, 제28조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언 해석상 소년원학교가 제2조 제3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한다면, 초등·중학교 과정 중인 소년원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중인 소년원학교 학생도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대상자이다. 그리고 학적을 보유하지 못 한 소년사범, 학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년사범 절차에 연루되면서 학업이 중단된 소년사범, 그리고 소년원학교에 학적을 두었지만 학습장애를 겪는 소년사범은 이 법 제28조가 정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해당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훈령인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은 교육감이 대안 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탁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위탁학생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6월 부산 교육감은 이 규칙을 근거로 부산소년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부산소년원의 위탁교육 지정 대상인 일부 직업훈련 과정에 소속된 소년원생은 일정한 시수의 교과과정을 수강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소년원학교를 소년보호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육정보시스템에 소년원학교 학생을 ‘위탁학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입력 시 소년원학교명 등 소년원학교 관련 용어나 내용을 입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 지침은 소년원학교 학생이 소년원생이었다는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낙인과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소년원학교(서울, 대구, 전주, 안양)에서 교과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 학적사항: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함.
- 성적: 소년원학교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
- ※ 소년원학교 학기말고사 시작 이후 입교한 경우 재적교 시험 응시 및 재적교에서 성적처리
- 출결상황: 소년원학교의 출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수업일수는 재적교의 수업일로 계산하여 인정
- 비교과 영역: 소년원학교의 입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
- 교육정보시스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진학: 재적교에서 재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함
- ※ 교육정보시스템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 ‘기타’로 등록함.
- ※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입력 시 소년원학교에 관한 내용이나 용어 입력 금지(학적사항에

소년원학교명 등)

※ 필요시 초·중등교육 소년원에서 초등학교 교과과정 편성 운영.

나. 소년사법 관계 법령 등

1) 소년법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소년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처벌보다는 교정교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학습은 소년법의 목적인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 제28조는 소년원의 교정교육 내용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소년원 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29조는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조까지 학교에 해당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또한 소년원학교 설치·운영에 있어 교육부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에 앞서 언급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0)은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제29조 제2항을 신설하여 법무부와 교육당국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보호소년법 제30조는 소년원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제31조는 소년원학교 입교시 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2조는 퇴원 후 학교 입학과 전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3조는 소년원장의 재량으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 등 외부 학교로 통학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외부로의 통학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교원 등)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그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 [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3조(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3) 보호소년 교육지침

법무부 훈령인 보호소년 교육지침은 소년원에 위탁·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지침 제9조는 보호소년 중 학적 미보유자를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학적 보유자에 대한 특성화 학교(초·중등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16조와 제17조는 각각 중학교 교과와 고등학교 교과를 정하고 있다. 보통교과 중 국어, 사회, 수학, 영어, 과학, 체육, 예술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공통 교과이고, 컴퓨터와 인성은 공통된 특성화교과이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검정고시반 운영) ① 소년원장은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제98조제2항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시험일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검정고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 처우로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은 검정고시반에 편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특성화학교)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소년원에 설치된 소년원학교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서울소년원 및 전주소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4조(편성·운영의 기본방향) ① 소년원학교장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조직, 학생의 실태, 교육시설·설비 등 교육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년·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③ 학생의 학기당 이수 보통교과목 수는 8개 이내로 편성한다.

④ 소년원학교장은 연간·학기간·주간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⑤ 소년원학교장은 과목별 시간을 배정함에 있어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행사활동 등으로 특정 교과 시수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소년원학교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중학교 교과) 중학교과정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교과: 컴퓨터, 인성
2. 보통교과: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제17조(고등학교 교과) 고등학교과정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교과: 컴퓨터, 인성
2. 보통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3. 소년원 학생 학습권 관련 국내 법령 등의 문제점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교육권을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소년사범 및 피구금소년에 대한 처우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베이징 규칙’과 ‘하바나 규칙’은 소년원과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에게 일반 학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제공은 해당 아동청소년의 성공적 사회복귀의 밑거름이 된다. ‘소년법’, ‘보호소년법’ 등과 같은 소년사범 관계 국내 법령은 베이징 규칙과 하바나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년사범에 대한 교육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은 소년원학교 학생을 위탁학생에 준해서 그 학적을 관리하고 그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원학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소년원생의 졸업장이나 교육 증명자료에 구금되었던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하바나 규칙’ 제40조의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외에 국내 교육 관계 법령에서는 소년원생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도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해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교육 관계 법령에 소년사범에 대한 학교교육 제공 기관인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년원학교 교육에 있어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또한 보호소년법 제29조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소년원학교가 학교의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불분명하다(해당 대통령령도 학교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음).

제3절 | 소년원 학생 학습권 관련 외국 입법례

1.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소년사범의 처벌 및 처우에 대한 기준에 관한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1974)(Pub. L. No. 93-415, 42 U.S.C. § 5601 et seq.)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소년사범 및 비행예방을 위한 조정협의회(Coordinating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정함으로써 소년사범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여러 부처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42 U.S.C. §5616. 소년사범 및 비행예방 조정협의회

(a) 구성: 구성원

(1) 연방 정부의 행정부에 독립적인 기구로, 소년 사법 및 비행 예방 협조 위원회가 여기에 설립된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주택 및 도시 개발부 장관, 소년사법 및 비행 예방국장, 국가 마약통제 정책국장,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재단 이사장, 이민 및 귀화국장, 대통령이 지정하는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진 다른 연방 기관의 관리들, 그리고 (2)항에 따라 임명된 개인들로 구성된다.

(c) 기능

(1) 이 위원회의 기능은 (주 및 지역 소년사법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보호자 없이 구금되거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에 관한 모든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 그리고 실종 및 착취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연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연방 소년 비행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Every Student Succeeds Act'(2015)(Pub. L. No. 114-94, 20 U.S.C. 6421 et seq.) Title I, Part D는 방임되거나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소년 구금시설에서의 교육과 출원 후 복학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위한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TITLE I—주 및 지역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 개선

PART D—방임, 비행 또는 위협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20 U.S.C. §6421. 목적 및 프로그램 승인

(a) 목적

이 부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방임 또는 비행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 부족, 주의 시설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여, 이러한 아동청소년이 모든 아동청소년이 충족하리라 기대되는 주 학업 기준을 동일하게 충족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 (2) 이러한 아동청소년이 기관수용으로부터 학업 또는 취업으로 나가는 성공적인 전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3) 위협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를 중퇴한 아동청소년과 교정기관 또는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나온 방임·비행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교육

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b) 프로그램 승인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및 이 제목의 6302(d) 조항에 따라 책정된 금액에서, 교육부 장관은 주 교육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이러한 기관이 방임, 비행 또는 위협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주 및 지역 교육 기관에 보조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6431. 자격

주 기관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상 공립교육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이하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 (1) 방임 또는 비행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 (2) 방임 또는 비행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주간(晝間)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 (3) 성인 교정기관에서.

미국 연방 교육부는 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따라 소년원과 같은 소년 구금시설에서의 교육 제공에 책임을 지는 주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주 정부의 교육부도 주 교육법에 따라 소년 구금시설에서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소년법원 학교(juvenile court school)’을 포함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플로리다 주도 ‘소년사법 교육(juvenile justice education)’을 통해 소년 구금시설에서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다.¹⁹⁾

2.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Education Act(R.S.O. 1990, c. E.2)는 ‘이례적 학생(exceptional pupil)’에게 동등한 학습의 기회와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원생은 이례적 학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법은 소년원 등에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원생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이하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 교육당국의 소년사법 교육에 대한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선영, 앞의 보고서, 59-64면을 참고하라.

“이례적 학생(exceptional pupil)”이란, 위원회가 subsection 11 (1)의 5번 항목의 iii 소항목에 따라 설립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적, 의사소통적, 지능적, 신체적 또는 다중의 이례성을 가진 학생을 의미한다.

- (a) 해당 학생이 거주 학생인 경우,
- (b) 다른 위원회의 교육 제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을 받아들이거나 등록하는 경우, 또는
- (c)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비가 장관에 의해 지불되는 경우; (“élève en difficulté”)

제171-40조 소년원(detention homes) 등에서의 프로그램

40. 다른 법에 따라 승인, 지정, 설립, 허가 또는 등록되고 교육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 시설, 가정, 병원 또는 기관 또는 이례적 학생을 위한 시범학교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Education Act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돌봄·치료·구금·교정 시설(CTCC Facilities)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in Government Approved Care and/or Treatment, Custody and Correctional Facilities)’에 소년 구금시설을 포함하고, 구금된 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²⁰⁾ 한편 온타리오 주의 교육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진단하고, 다양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개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진다.

3.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의 시민 및 거주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4조는 유럽 연합의 시민 및 거주자의 교육권(right to education)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교육권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및 평생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제1항), 이러한 권리에는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20)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육당국의 소년사범 교육에 대한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선영, 앞의 보고서, 64-69면을 참고하라.

포함된다(제2항). 한편 이 헌장 제24조는 아동은 자기 복지(well-being)에 필수적인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제1항).

2016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형사 절차상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아동에 대한 절차적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을 발표하였다.²¹⁾ 이 지침 제12조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 구금되어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신체적 발달 보장, 교육 및 훈련 보장, 가족과의 소통 보장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회원국은 자국의 규범적·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 지침의 내용을 집행하여야 한다.²²⁾

유럽연합 지침 2016/800
 제12조 - 자유 박탈의 경우의 특별한 처리

1. 회원국은 구금된 아동이 성인과 별도로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중략)…
5. 아동이 구금될 때,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아동의 건강과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을 보장하고 유지;
 - (b) 신체적, 감각적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
 - (c)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이고 정기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 (d) 아동의 발달과 사회로의 재통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
 - (e) 아동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 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구금 기간에 비례하고 적절해야 한다. …(하략)…

21) DIRECTIVE (EU) 2016/8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16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children who are suspects or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https://eur-lex.europa.eu/eli/dir/2016/800/oj>, 최종접속일 2024. 1. 29.).

22) 유럽 연합의 법령 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 가이드(Joint practical guide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for persons involved in the drafting of European Union legislation)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입법은 그 구속력 정도에 따라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등으로 구분된다(2항). 여기에서 '규정'은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그 전체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의 형태이고(2.2.1항), '지침'은 회원국들이 그 지침의 규율 대상이 됨을 표시하는 형식의 입법이다(2.2.2항). 지침의 경우에는 회원국들에게 그 내용을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강의 내용만을 정하는 방식으로 입안된다(2.2.2항).

제4절 | 소결

제1절에서는 소년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지적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낮은 기초학력과 낮은 학업성취와 같은 소년사범의 학습 관련 특성과 교과교육 제공을 위한 전문교원 및 물적 자원 부족과 직업훈련에 편중된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소년원 기관 차원의 한계가 소년원 교과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에서의 교과교육 제공은 소년원생의 복학 후 학업 지속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과 재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소년사범의 학습적 문제점과 소년원 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년원 교과교육이 확대되고 실질화 되어야 한다.

제2절에서는 소년원생 학습권의 규범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 등을 검토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추상적 차원에서 우리 ‘헌법’을 비롯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의 교육 관계 법령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생 학습권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소년법’, ‘보호소년법’ 등과 같은 소년사범 관계 법령에만 있을 뿐이고, 교육 관계 법령에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교육 관계 법령에는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년원학교 교육에 있어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3절에서는 소년원생의 학습권에 관한 미국과 캐나다의 입법례와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는 공통적으로 교육 관계 법률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주관 부처로 교육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구금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제공을 각 회원국의 의무로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소년사범 관계 법률은 소년사범의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을 위한 협의회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소년사범에 대한 교육이 교육부와 법무부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각 주의 교육부는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년사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교육법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을 특수 교육이 필요한 ‘이례적 학생’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교육법에 따라 ‘정부 승인 돌봄·치료·구금·교정시설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표 2-4-1]에서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 관계 법률은 구금시설의 소년사범을 위한 교육 제공에 있어 교육부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년사범의 학습권을 소년사범 영역과 교육 영역에서 일관되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지침을 통해 피구금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 의무를 각 회원국에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사범 관계 법률인 보호소년법과 교육 관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이 단절되어 있다. 이러한 단절은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 저하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력 부재로 이어진다.

▶▶▶ [표 2-4-1] 소년사범 교육에 관한 국내외 법률 등 비교

국가	법명	주요내용
한국	보호소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기준 제시 • 보호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소년원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함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무상교육 원칙 제시 •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학적 관리, 교육과정 등 세부 사항 정함 ※ 주의: 소년원학교 및 소년원학교 학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미국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사범의 처벌 및 처우 기준 제시 • 교육부와 법무부의 공동 책임 강조
	Every Student Succeed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 제공 • 소년 구금시설에서의 교육과 복교 지원 강조
캐나다	(온타리오 주) Educa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 구금시설의 소년사범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 • 이례적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 제공
유럽연합	DIRECTIVE (EU) 2016/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회원국에 피구금 아동의 교육 및 훈련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부과(재량권 인정)

제 3 장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 현황

유진

제3장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 현황

제1절 | 소년원학교 운영 현황

1.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관

보호소년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은 초·중등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의료재활소년원, 인성교육소년원으로 분류되며, 9호와 10호 처분자 중 학적을 보유한 학생은 초·중등교육 소년원에서, 학적을 미보유한 학생 중 9호 처분자는 인성교육소년원에서, 10호 처분자는 직업훈련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 총 10개의 소년원 중 남자 소년원인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²³⁾와 여자 소년원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가 초·중등교육소년원인 소년원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 4개의 소년원은 특성화 학교 형태로 중고등학교 교과교육(9·10호), 직업훈련(10호),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9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²⁴⁾

소년원학교가 지금과 같은 특성화학교 체제로 자리 잡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다. 1988년 소년원법을 개정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정규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년원학교가 개교할 수 있었다. 이에 1990년부터 소년원학교

23) 2024년 중학교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24) 참고로, 여자 소년원인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남자 소년원인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제주소년원(한길정보통신학교)은 학적 미보유 소년원생에 대한 직업훈련(10호)과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9호)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부산소년원(오룡정보산업학교)은 10호 직업훈련과정만 설치되어 있으며, 대전소년원(대산학교)는 의료재활교육을 제공한다. 한편 2023년 6월 부산소년원은 전국 최초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에서는 학적 보유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교과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소년원학교 개교 전에도 소년원에서는 초·중등 교과교육이 개설되어 있었다. 1958년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중학교 교과교육이, 1984년에는 고등학교 교과교육이 개설되었다. 한편 2000년에 소년원학교는 특성화학교 체제로 전환되었고, 인성교육과 컴퓨터 교과목이 특성화교과로 지정되었다. 현재 인성교육은 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9년에는 여성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2. 소년원학교 학생 현황

가. 학생 현황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4개 소년원의 2023년 교과교육과정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총 260명이다. 이 중 9호 처분자는 135명, 10호 처분자는 125명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80명,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74명,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 50명, 여자 소년원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56명이다.

▶▶▶ [표 3-1-1] 소년원 교과교육과정 일일 수용인원(2023)

(단위: 명)

구분	서울원 (고봉중고)	대구원 (읍내고)	전주원 (송천중고)	안양원 (정심여중고)	계
9호	35	30	38	32	135
10호	45	20	36	24	125
계	80	50	74	56	260

※ 자료출처: 법무부 내부 자료

소년원학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연중 수시로 입교하며 9호 처분은 6개월, 10호 처분은 2년 이내에 출원하므로 학생수 변동이 큰 편이다. 따라서 일일 평균 인원 외에 학생수가 증가하는 하반기의 재학생 현황을 교육과정별로 따로 살펴 보았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경우 기존 서울소년원에서만 운영되었으나 소년원생 중 고등학교 학업연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소년원에 2018년 1월, 안양소년원

에 2019년 3월, 대구소년원에 2021년 8월에 증설되었다. 2023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4개 소년원학교의 재학생은 총 344명으로 초등학생 5명, 중학생 160명, 고등학생 179명이다.

▶▶ [표 3-1-2] 소년원학교 재학생 현황(2023. 11. 28. 기준)

(단위: 명)

구분	서울원 (고봉중고)	대구원 (읍내고)	전주원 (송전중고)	안양원 (정심여중고)	계
초등학생	2	-	1	2	5
중학생	47	-	65	48	160
고등학생	47	69	30	33	179
계	96	69	96	83	344

※ 자료출처: 법무부 내부 자료

나. 소년원학교 학생의 교과교육 만족도 등

박선영(2021)은 소년원학교 학생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7개 소년원의 학생 총 324명(초·중등교육 과정 115명, 직업훈련과정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소년원학교 설문조사(2021)”라 한다)를 실시하였다.²⁵⁾ 이 조사는 소년원학교 학생 대상 최신의 대규모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 조사는 소년원학교 학생 학습권 보장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학습권의 주체인 소년원학교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 설문조사 결과 중 본 연구의 초점인 초·중등교육 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소년원학교 설문조사(2021) 응답자 중 44.8%에 해당하는 145명이 소년원 입원 전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²⁶⁾ 한편 교과과정이 제공되는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전주소년원의 경우 응답자 115명 가운데 107명은 학적을 유지하고 있어 입원 후 교과과정으로 편입되었다. 학적 보유자 외에도 입원 전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25) 박선영(2021), 앞의 보고서, 110면 이하에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설문조사 대상자는 340명이었고, 최종 설문 참여자는 324명으로 95.3%의 참여율이었다.

26) 이하 소년원 입원 전 학업 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는 박선영(2021), 앞의 보고서, 111~112면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44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응답하였지만 의무교육이나 본인의 복교 희망으로 교과과정에 배치된 소년원생도 8명이 있었다.

둘째, 교과과정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선택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⁷⁾ 교과과정 선택이유로는 ① “출원 후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서”(86.1%), ②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서”(65.2%), ③ “출원 후 대학교 진학”(52.2%), ④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서”(52.2%)의 순으로 높은 선택률을 보였다. “검정고시가 싫어서”(47%)와 “직업훈련 받기가 싫어서”(21.7%)라는 소극적 이유는 상대적으로 선택률이 낮았다.

셋째, 교과과정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⁸⁾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6개 항목을 5점(1점-매우 불만족, 5점-매우 만족) 척도로 측정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척도의 중간 값(3점-보통)을 넘는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중 “선생님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8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6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수업 평가방식” 만족도(3.57점), “교육시설” 만족도(3.53점), “배우는 내용” 만족도(3.53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선영(2021)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응답 편향인 ‘중간 편향’을 고려한다면,²⁹⁾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만족하고 있다는 적극적 해석을 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³⁰⁾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년원 학생의 교과과정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만, “선생님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선생님의 전문성”과 같은 교사의 인적 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수업 평가방식”, “교육시설”, “배우는 내용”과 같은 교과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만족도보다 상대적

27) 이하 교과과정 선택이유 조사 결과는 박선영(2021), 앞의 보고서, 117면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8) 이하 교과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는 박선영(2021), 앞의 보고서, 118면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9) 동아시아인들이 유럽계 미국인들에 비해 더 중간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C. Chen, S.Y. Lee, and H.W. Stevenson(1995). Response style and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rating scales among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6(3), 170-175).

30) 더욱이 박선영(2021), 앞의 보고서, 120면, <표 5-23>(교과과정 학생 만족도)에는 각 척도 점수 별 인원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균값만으로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만족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기에 부족하다.

으로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전체 소년원 학생 324명(실제 응답자 323명)을 대상으로 소년원 교육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한 결과 중 교과교육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¹⁾ “활동적이고 체험 위주의 수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평균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선생님이 교과 교육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상담해 줘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 평균이 3.9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년원 학생은 집과 가까운 소년원에 가야한다”(3.76점), “소년원에서 나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소년원이 도와주어야 한다”(3.72점)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강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소년원의 교육장비”(3.67점)와 “소년원의 시설”(3.56점)이 일반학교와 비슷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강한 동의를 얻었다. 한편 “소년원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교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로 평균이 3.55로 직업훈련 과정에 배치된 학생들의 교과교육 과정 참여 의사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년원학교 설문조사(2021)는 소년원 교사 및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조사하였다. 교사 및 직원들이 생각하는 소년원 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원은 우리 같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선생님이 필요하다”(4.29), ‘공부(수업)를 좀 더 쉽게 가르쳐주어야 한다’(4.18), ‘선생님이 교과 교육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상담해줘야 한다’(4.14), ‘소년원은 일반학교처럼 전문적인 선생님이 수업해야 한다’(4.07), ‘활동적이고 체험 위주의 수업이 필요하다’(3.96), ‘소년원의 교육장비는 일반학교와 비슷해야 한다’(3.86), ‘소년원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교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3.63), ‘소년원의 시설은 일반학교와 비슷해야 한다’(3.45), ‘소년원에서 나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소년원이 도와주어야 한다’(3.29), ‘소년원 학생들은 모두 일반학교와 비슷한 교복을 입어야 한다.’(3.02), ‘소년원 학생은 집과 가까운 소년원에 가야한다’(2.66), ‘직업훈련은 단순한 직업체험 정도로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2.11) 순이었다.”³²⁾

31) 이하 개선 필요 사항 조사 결과는 박선영(2021), 앞의 보고서, 139-140면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32) 박선영(2021), 앞의 보고서, 143면.

3. 교원 인력 현황

가. 교과담당 인력 현황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보호소년법 제30조 제1항).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보호소년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한편 소년원 학교의 수업, 생활지도 업무는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보호소년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법무부는 2019년에 소년원학교에서 교과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교원 자격 보유자를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채용하였다. 현재 4개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담당으로 채용·배치된 직원은 총 16명으로 모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이다. 이 중 서울원, 안양원, 전주원에 배치된 교사는 전문경력관이며, 비교적 최근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신설된 대구원의 경우 2021년 11월에 3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고용기간 2년이 경과한 2명의 교사는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 [표 3-1-3] 소년원학교 교사 현황(2023)

지역	소년원명 (학교명)	교육과정	과목별 교사 현황	채용형태
경기	서울소년원 (고봉중고)	중·고	5명(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전문경력관 (2019년~)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	중·고	4명(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문경력관 (2019년~)
전북	전주소년원 (송천중고)	중·고	4명(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문경력관 (2019년~)
대구	대구소년원 (읍내고)	고	3명(국어, 수학, 영어)	공무직 (2021년~)

※ 자료출처: 법무부 내부 자료

2019년 이후 전문 교원자격이 있는 교사가 소년원학교에 배치되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등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모든 교과목에 전담교사가 확보되지

않아 안정적인 교육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과학의 경우 서울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소년원학교에는 전담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구원은 과학 외에도 사회과 교사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통교과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어, 한문, 음악·미술, 체육 과목은 모든 기관에서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중복 배치되거나 보호직 또는 유급강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원에서는 국어 교사가 과학을, 영어 교사가 사회를 함께 지도하고 있다. 전주원의 경우 국어 교사가 한문 과목을 함께 담당하고 사회 교사가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며, 그 외에 과학과 미술은 일반학교에서 재직했던 퇴직교사를 유급강사로 채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원에서는 전문경력관 교사가 아닌 보호직이나 공무원 직원이 과학, 음악, 한문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은 유급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원에서도 전문경력관이 배치되어 있는 5개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은 보호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전담교사가 없는 교과목을 다른 과목의 교사나 보호직 직원이 담당함으로써 해당 과목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충실한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교직 경험이 없는 보호직 직원이 교과과목을 담당할 경우 수업 외에도 수행평가, 지필평가, 학습 발달 상황 작성 등 교과교육에 수반되는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경력관이 아닌 보호직 직원은 6개월마다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교과교육을 담당하던 보호직 직원의 보직이 변경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면 해당 과목 담당자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여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는 일반 학교에서 1년 간 동일한 교사가 수업을 지도하는 것과 달리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나. 교사인력 업무 및 근무 조건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사는 교과담당 교사와 담임교사로 구성된다. 담임 교사는 수용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교육관 외에도 생활관 내에서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교사들 역시 대부분 교과과목 수업 및 지도

외에도 담임교사를 겸하고 있다. 교과과목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교사는 오전부터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당직 의무는 없으나 그 외에 담임교사로서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내면서 담당 과목의 수업시간 외에도 감호 업무를 맡고 있다.

제2절 |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교육과정 운영 현황

소년원학교의 초·중등교육은 9호와 10호 처분자 중 일반학교인 초·중·고등학교의 학적이 유지되는 학업연계 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년도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수업은 매 학년 190일 이상 운영된다.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를 중학교 1,122시간, 고등학교 1,156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4년도 4개 소년원학교는 연간 수업시수를 중·고등학교 과정 모두 1,610시간으로 편성하고 있다.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은 보통교과 및 특성화교과를 포함하는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제된다. 소년원학교의 보통교과 교육과정 편제는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한문/보건/외국어/진로와 직업 등)의 8개 교과(군)으로 편제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의 9개 교과(군)으로 편제된다. 소년원학교의 특성화교과는 인성교육과 컴퓨터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과교육 중 보통교과와 특성화교과의 시간비율은 4:6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6:4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에 위치한 송천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도 소년원학교의 수업시수 배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주간 시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기 중 총 주간 시수는 35시간으로

보통교과 12시간, 특성화교과 1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기초학력 3시간이 배당된다. 평일 하루 일과 중 교육시간은 7시간으로 오전에 1~3교시, 오후에 4~7교시가 진행된다.

▶▶ [표 3-2-1] 송천중고등학교 수업시수 배정(2024)

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연간시수	주간시수	연간시수	주간시수
교과(군)	특성화 교과	컴퓨터 교육	276	6	276	6
		인성교육	368	8	368	8
		소계	644	14	644	14
	보통교과	국어	63	1.5	46	1
		수학	75	1.5	75	1.5
		영어	63	1.5	63	1.5
		한국사	-	-	46	1
		사회	75	1.5	75	1.5
		과학	92	2	46	1
		체육	92	2	92	2
		미술	46	1	46	1
		한문	46	1	63	1.5
		소계	552	12	552	12
	창의적체험 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276	6	276	6
기초학력	읽기 쓰기 기초수학	138	3	138	3	
계			1,610	35	1,610	35

※ 출처: 법무부 송천중고등학교, 2024학년도 교육계획, 법무부.

주: 주간시수는 1학과 2학기에 배당된 주간시수의 평균임.

2. 보통교과수업 운영 현황

보통교과수업은 소년원학교의 특성상 학년별로 운영되지 않으며 대체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분리하여 통합학급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양원의 경우 중학교 과정을

두 학급으로 구성하여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생을 한 반으로, 중학교 2, 3학년을 한 반으로 편성하며 고등학교는 1, 2, 3학년을 통합하여 한 학급으로 편성한다. 전주원은 중학교 1, 2학년과 3학년을 분리하여 2학급, 고등학교 1학년과 2, 3학년을 분리하여 2학급으로 총 4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원의 경우 학년과 상관 없이 중학교 통학학급 2반, 고등학교 통학학급 2반을 운영하며, 2023년까지 고등학교 과정만 개설되었던 대구원은 학년과 상관 없이 통학학급을 운영하되 9호 처분자와 10호 처분자를 분리하여 별도 학급으로 편성하였다. 이처럼 각 기관마다 학급 편성방식이 다소 상이한 가운데 모든 기관이 학년을 통합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기관 내에서도 시기별 수용인원 구성이 변동됨에 따라 학급수 역시 변동되기도 한다.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 소년원학교에서 학년별 수업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상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학교의 특성상 학업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이 많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습내용을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소속 학년의 수업진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의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년원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생들 간의 학업경험 및 학습능력의 편차가 심하여 학년과 무관하게 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수학과 같이 학습내용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낮은 수준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다음 단계의 내용 습득이 가능한 과목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학생 간 편차에 더하여 연중 수시로 학생의 입·출원이 이루어져 학급 구성원이 변동되는 상황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결국 교과교육에 있어 학습내용이 누적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기초내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소년원학교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교과과목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각 학년의 교과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교사들이 학습지를 제작하여 배포·사용하고 있다.

3. 기초학력교육 현황

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2022년 10월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대상 학생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법무부 소년보호과는 ‘2023년 소년원학교 기초학력증진 시범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2023년 3월에 4개 소년원학교의 재학생 총 180명에 대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입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진단이 이루어졌다. 진단검사 도구는 읽기, 쓰기, 기초수학의 세 영역에 대하여 중학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6학년 성취수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1~3학년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검사지가 사용되었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개별 학생의 기초학력 미도달 여부를 확인한 후 4개월 과정의 보정학습을 실시한 후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초학력증진 시범운영 기간에 보정학습은 대상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아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상 학생은 기관 실정에 따라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만 따로 반을 편성하거나 도달 여부에 무관하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만 대상으로 보정학습을 실시한 반면 대구원과 안양원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보정학습이 이루어졌다. 전주원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 초기에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보정학습을 실시하다가 2023년 10월부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대상 학생뿐 아니라 보정학습 시간 편성 방식도 각 기관에 따라 달리 이루어졌다. 방과후 시간을 보정학습에 할애하기 어려운 소년원학교의 특성상 4개 기관 모두 일과 시간 중 보정학습이 이루어졌다. 안양원의 경우, 주 35시간의 수업시간 중 인성교육이나 담임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던 시간을 보정학습으로 전환하여 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각 1시간씩 편성하였다. 대구원은 보통교과 과목인 수학과 국어 시간 중 일부를 보정학습으로 전환하여 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각 주 1시간씩 편성하였다. 전주원의

경우에는 시범운영 초기에 보통교과과목 시간을 활용하여 보정학습을 실시하다가 미도달자만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교육반을 별도 편성한 이후에는 보통교과과목 시간 외에 체육활동 시간을 보정학습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기초학력 증진 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운영 기간 중 보정학습 운영 방식을 변경한 전주원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주원은 당초 대구원, 안양원과 같이 진단평가 결과 기초학력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통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보정학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기초학력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기초학습이 이루어지고 보통교과 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교육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미도달 학생 간에도 학습능력의 편차가 있고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함에도 집합교육 방식에서는 개별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주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중 특히 보정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소규모의 학습지원교육반을 편성하였고(누계 중학생 9명, 고등학생 7명) 대상학생들의 교과교육 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교과 시간이 아닌 체육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오후 시간에 보정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제3절 | 소결 - 개선 필요 사항 진단

1. 소년원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미비

가. 소년원학교의 특성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는 학생들은 전적학교의 학적이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헌법상 권리인 교육권을 지닌다. 이와 동시에 소년원학생은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으로서 출원 후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정교육의 대상이다.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의 목적이 사회적응에 있으며 출원 후 학교에 복귀해야 하므로 보호처분 기간 중 보호소년의 학적유지와 학업

연계는 교정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즉, 보호소년 처우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하며, 소년원학생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소년원학교는 학생의 구성과 기관의 운영방식의 측면에서 일반학교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우선, 소년원학생 중 상당수는 학업결손이 누적되고 학습경험이 부족하여 정규 교과과정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함께 학업동기가 결여되어 학습의욕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에 따라 본인이 속한 학년의 교과과정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능력을 지닌 경우가 많으며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1년 단위의 학사 일정에 따라 교과교육 과정이 구성되고 학급 편성과 교사 배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일반학교와 달리 소년원학교는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이 연중 수시로 입교하여 학생 구성의 변동이 심하다. 이와 함께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로 보호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매달 일부 인원이 출원하여 1년 주기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학사일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상황에 더하여 일반학교에 비하여 학생들 간에 학업수준 및 학습능력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 소년원학교의 특징이다. 소년원학생들과 같이 학업의욕 및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학생간 편차가 심한 경우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집중 지도가 요구된다. 이는 특히 일반학교 재학 중 누적된 학업결손을 소년원학교의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소년원학교와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일반학교와 같은 집합교육 외에 개별지도 또는 소규모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학급 편성

현재 초·중등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4개 소년원학교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소년원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4개 소년원학교 모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분리하여 수업을 진행하되 각 교육과정 내에서는 여러 학년을 통합하여 학급을 편성하고 있다. 일반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년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소년원학교의 특성상 해당 학년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이수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소년의 대다수가 해당 학년의 교과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학업결손 상태에 놓여있으므로 학년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효과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통합학급 운영은 그 자체로 교육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 학년보다 저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을 습득함으로써 일반학교에 재학할 당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학급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통합학급 운영이 학급당 학생수를 증가시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의 밀도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2023년 4개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과정에 편입된 보호소년 수용인원은 일일 평균 260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18.5명 가량이다. 그러나 수용인원의 변동에 따라 학급 편성이 수시로 변화하며, 각 기관의 학업연계 보호소년 인원 또는 특정 학령의 수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해당 학급의 학생수는 30명을 훨씬 넘어서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학업수준과 학습의욕이 낮은 가운데 학생간 편차가 심한 소년원학생들에게 학업동기를 부여하고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파악하여 적합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밀도있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 등 교과내용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원 후 사회적응을 위한 동기 부여와 품행 교정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맺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학급당 정원보다 소규모의 학급 편성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운영 여건은 교사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을 주기에 용이한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기초학력 학습지원교육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초학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소수의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원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와 달리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높고 하루 24시간의 일과가 짜여져 있어 방과후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소년원학교의 기초학력 증진 사업은 학생 구성 및 기관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시범운영 과정에서 각 소년원학교에서 보정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는 일반학교와 달리, 소년원학교에는 방과후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정학습 시간을 이미 짜여져 있는 하루 일과 내에 배정해야 한다. 소년원학교의 수업시간에는 교과과목 이수에 배정된 시간 외에도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보정학습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정학습 영역인 읽기, 쓰기, 기초수학 관련 과목인 국어와 수학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던 정규수업시간 중 일부를 보정학습 시간으로 할애하거나 체육활동, 인성교육, 담임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가운데 보통교과인 국어, 수학 시간을 활용하여 보정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목당 주간 시수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되어 일반교과 수업이 미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정학습이 실시된 경우 기초학력 도달 학생의 보정학습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일반교과 수업이 축소되는 결과만 나올 우려가 있다.

2023년 시범운영에서는 서울원과 전주원에서만 미도달 학생을 분리하여 보정학습 실시하였으나 향후 4개 소년원학교에서 모두 미도달 학생들을 분리하여 보정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보통교과교육 시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보정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섬세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보정학습은 원칙적으로 개별 지도가 가능한 맞춤형 지도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소그룹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보정학습 공간과 추가 감호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교사 인력 부족

소년원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소년원학생들은 학업수준과 학습의욕이 낮을뿐 아니라 학생 간의 수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학교와 같이 30명 내외의 학생으로 편성된 학급을 교사 1인이

원활하게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더하여 소년원학교의 학생 구성이 유동성이 크다는 점도 교사 인력 확보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의 입교와 출원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학업연계 보호소년의 송치건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각 소년원학교의 학생수와 구성은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안정적인 학사일정에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일반학교와 달리 소년원학교는 학생의 이동이 많아 교사가 담당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업내용을 유동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또한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수용 및 품행 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년원학교에서는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학교에 비해 소규모로 편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 소년원학교의 운영 현황은 이러한 소년원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사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과학과 같은 필수과목을 전담하는 교사 인력이 부재하여 타과목의 교사나 보호직, 또는 유급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호직 직원이 교과과목을 담당할 경우, 관련 전공자를 배치하더라도 교직 관련 경험이 없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남게 된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어 교육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교직 경험이 있는 유급강사를 채용하는 것 역시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선, 소년원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할 유급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각 소년원학교는 현재 2학급에서 4학급으로 편성되며 각 과목의 주간 시수가 1~2시간으로 유급강사를 채용할 경우 주간 시수는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에 불과하다. 이처럼 시수와 급여가 적은 유급강사 채용에 응하려는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우며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소년원학교는 유급강사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급강사가 채용되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교원 자격이 있는 전문경력관 교사를 채용하여 서울원, 안양원, 전주원에 총 13명이 배치되었고 최근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한 대구원에는 3명의 공무원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교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교과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교과교육에 있어서 학생지도와 수업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이 소년원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수업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학습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의욕을 부여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 교사의 확보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교사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보통교과가 중학교는 8과목, 고등학교는 9과목이지만 현재 각 소년원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및 공무원 교사는 3명에서 5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관에 따라 적게는 4과목, 많게는 6과목을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타과목 교사, 보호직, 유급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과목들은 충실한 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어 전문 교사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 교사 인력이 확보된 과목의 경우에도 각 기관의 해당 과목 지도를 1명의 교사가 전담하고 있어 소년원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수업 및 개별지도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이에 더하여 수용 관련 업무와 교과교육 관련 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전문경력관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소년법 및 동법 시행령은 소년원학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교원의 업무를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실무 현장에서 교원 자격을 갖추고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소년원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담당과목 지도 외에 담임교사를 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경력관 교사들은 담당 교과과목의 수업시간 외에도 담임시간과 특성화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시간에 감호업무를 하고 있으며 생활관에서의 생활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경력관 교사들은 일반학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 소년원학생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수업연구 등 교과교육을 위한 업무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현재 소년원학교는 안정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과목별 전문 교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일부 과목은 여전히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경력관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1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지도하

고 있어 개별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용 관련 업무와 교과교육 관련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전문경력관 교사들이 교수법과 교재연구를 통한 밀도있는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3. 교육부·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미흡

소년보호법은 학교 설립기준, 수업료, 학교시설 이용, 학생 징계, 학교회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등에서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이 소년원학교에 적용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평가, 학교 지도·감독 등 교육부장관의 권한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로서 설치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소년원학생들 역시 정규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생의 지위를 가진다.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 소년원학교에 입교한 학업연계 보호소년은 전적학교의 학적이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년원학교와 학생의 법적 지위,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보호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 등을 종합해보면 소년원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의무로서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4개 소년원학교와 교육부처 간의 소통과 지원·협력은 각 기관과 관할 교육(지원)청 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원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대구시 교육청과 지원 관련 협의를 시작하여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가 월 1회 소년원을 방문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는 원생들을 상담하며 출원 후에도 상담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년원학교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협조 아래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직업훈련 과정이 대안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아 원생들이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산소년원의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위탁교육생으로 지정된 학생들을 위한 국어와 국사 수업에 초빙강사(퇴직교사) 지원, 체육기자재 기증 등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부 소년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과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하며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업무 협약이나 제도화된 소통 채널이 아닌 실무자 간의 개별적인 소통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무부와 교육부·교육청 간에 법적 근거를 지닌 협의체나 소통 경로가 부재한 것은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과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야기하며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협조의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제도화된 협의체가 부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법무부와 교육부·교육청 간의 소통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각 조직내 칸막이 구조와도 관련된다. 소년원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교육청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영역은 기초학력증진 사업 운영, 교사 지원 및 직무연수, 교육기자재 지원, 학적관리 및 진학 관련 편의 제공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대해 소년원학교가 협의를 진행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할 때 교육부·교육청 내에서 각 사안과 관련된 부서를 파악하여 각각 접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며, 소년원학교 측의 요청사항이 교육부·교육청 내에서 공유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보고된 것은 직무연수 제공과 고등학교 진학시 온라인 면접 허용 여부이다. 우선, 현재 소년원학교에서 보통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교과수업 관련 직무연수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2022년 10월에 마련된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소년원학교에 기초학력 진단 및 보장자료, 학습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 업무 담당자 협의회가 개최되어 이후 소년원학교의 기초학력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연수가 실시되었다. 이를 제외하면 소년원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 관련 직무연수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소년원학교에서 교원 대상 직무연수에 소년원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소년원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시 면접방식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소년원 송치기간 중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가운데 입학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지정된 면접일에 맞춰 면접장소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교과교육소년원으로 지정된 소년원이 전국에 4개에 불과하므로 거주지역과 진학희망학교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년원에 수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입학면접을 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면접을 볼 때 감호인력이 함께 이동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면접일자를 동일하게 지정하므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다수일 경우 소년원 교사 및 직원들의 상당수가 감호인력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된다. 이러한 소년원학교와 학생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시 온라인 면접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4 장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강태경 · 유진

제4장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 정책 환경 분석

소년원 학생 학습권에 관한 선행연구 및 규범적 근거 그리고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책 환경 분석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1-1]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 분석

강점 : Strength	약점 :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 임용으로 교과교육 역량 강화■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의 교사로서의 높은 소명의식■ 법무부,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중 '소년원생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정책과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지원에 관해 소년사법 관계 법령과 교육 관계 법령 간 큰 간극■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교원 인력 및 교과교육 예산 부족■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에 대한 소년원생의 낮은 의욕 및 만족도
기회 : Opportunity	위험 :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대 국회,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호소년법 개정안 발의(강득구 의원 등 26인)■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중 '소년원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포함■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적학교, 소년원학교 학생 학적 관리 및 복적 등에 비협조■ 교육부,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을 소관 업무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데 소극■ 관계 부처 및 기관,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충에 소극■ 최근 불거진 소년 강력범 등에 대한 보도 등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 확대

정책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은 강점을 살려 기회를 활용하거나(SO) 위험을 극복하는(ST) 전략과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활용하거나(WO) 위험을 극복하는(WT) 전략이다.³³⁾ [표 4-1-1]정책 환경 분석에 따르면,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SO 전략

- ①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 제도의 효과성 입증을 통한 기회 활용
- ②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기회 활용

■ ST 전략

- ①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 제도의 효과성 입증을 통한 위험 극복
- ②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위험 극복

■ WO 전략

- ① 소년사법 및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개정을 통한 기회 활용
- ②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통한 기회 활용

■ WT 전략

- ① 소년사법 및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개정을 통한 위험 극복
- ②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통한 위험 극복

첫째, 법무부는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위 SO 전략과 ST 전략 중 강점을 살리는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 제도의 효과성 입증’은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 전후 소년원학교 학생의 출원 후 학업 지속률, 취업률, 재범률 등의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소년원 학생 학습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는 소년사범의 교과교육 참여 및 기초학력 증진이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제2장 제1절 참고). 반면에 국내에서는 소년사범의 교과교육 참여 및 기초학력 증진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약점인 ‘교과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33) SWOT 분석 방법론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S. Ghazinoory, M. Abdi, and M. Azadegan-Mehr (2011), “SWOT Methodology: A State-of-the-Art Review for the Past, A Framework for the Future”,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12, no. 1, 24-48을 참고하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및 기관을 설득하여야 하는데 그 설득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강화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여 교과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 부처 및 기관을 설득하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국회 입법이나 관계 부처의 정책과제의 추진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법무부는 소년원생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 현황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법무부는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발맞춰 소년원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과정 소년원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제3장 참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을 통한 기초학력 담당 교사 지원과 대학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다른 관계 기관의 협력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 및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소년원생 학습권의 규범적 근거에 대한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교육 관계 법령에 없고 소년원생 학습권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소년사법 관계 법령에만 있어 소년원학교 교육에 있어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제2장 제2절 참고). 또한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적 관리 및 복적 등에 있어 전적학교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협조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제3장 참고). 따라서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과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을 소년사법 및 교육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새롭게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관련 법률일부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에 적절한 규범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넷째, 법무부는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 부족은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의 한계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이다(제2장 제1절, 제3장 참고). 그리고 이 문제는 소년원학

교 교과교육의 질 저하의 원인이다. 소년원생의 교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도 부분적으로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에 기인한다. 앞서 언급한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효과성에 관한 자료 확보,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설득,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의 법적 근거 강화는 인적·물적 자원 확보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인적·물적 자원 확보 노력은 별개의 전략이라기보다 앞서 언급한 다른 전략의 목표로 이해될 수 있다.

제2절 | 관계 법령 개정안

이 절에서는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에 적절한 규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소년사법 및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 촉진과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 제28조가 정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보호소년등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에 역할을 담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제60조가 정한 ‘각종학교’에 소년원학교를 포함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법상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 [표 4-2-1] 초·중등교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생략) 1~3. (생략) 〈신설〉 ②~⑧ (생략) 〈신설〉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u>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u> 」 제1조의2 제4호에서 정한 <u>보호소년등</u> ②~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u>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유치 또는</u>

현행	개정안
⑨~⑩ (생략)	<p><u>소년원 수용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p> <p>⑩~⑪ (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10조 내지 제11조로 함)</p>
<p>제60조(각종학교) ① (생략)</p> <p>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u>대안학교</u>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제60조(각종학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대안학교와 제60조의4에 따른 소년원 학교를</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0조의3(대안학교) (생략)</p> <p><신설></p>	<p>제60조의3(대안학교) (현행과 같음)</p> <p>제60조의 4(소년원학교) ①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교과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소년원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소년원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60조의4 내지 제60조의11 (생략)	제60조의5 내지 제60조의12 (제60조의4 내지 제60조의11을 제60조의5 내지 제60조의12로 함)

둘째, 보호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 제28조에 소년원생 학습권 최대 보장 원칙을 둔다. 제29조에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 요청의 근거를 둔다.

한편 제29조의4를 신설하여 ‘소년원학교 교육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에 있어 법무부와 교육부의 공동책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반영한 것이다(제2장 제3절 참고). 보호소년법 제31조 제4항 및 제32조는 각각 학적사항의 송부와 전·편입

학의 허가를 전적학교 등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 수준에서 전적학교 등의 적극적 협조가 드물다. 이에 소년원학교 소재지 교육감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둬으로써 학적관리(제31조)와 퇴원 후 전·편입학(제32조)에 있어 전적학교 등의 장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표 4-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생략) 〈신설〉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소년원의 초·중등교육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통해 보호소년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 -----제2조제5호의 각종학교----- ----- -----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³⁴⁾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생략) 〈신설〉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소년원학교 교육정책협의회 등) ① 소년원학교의 차별 없는 초·중등교육 여건 개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소년원학교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소년원학교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2. 교육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3. 그밖에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공동의장과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동의장: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2. 위원: 소년원학교 소재지 시·도 교육감 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된다.

현행	개정안
	<p>④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소년원학교 교육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⑤ 실무협의회 의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항에 의하여 공동의장이 되는 장관의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당해 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제3항에 의하여 의장이 되는 교육감의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당해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⑥ 실무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장이 된다.</p> <p>⑦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공동의장이 정한다.</p>

제3절 | 제도 개선 방안

1. 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활용

가. 교사 인력 충원

1) 전문경력관 교사 충원

현재 소년원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일반학교의 평균 수치를 상회한다. 2023년 전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중학교 24.6명, 고등학교 22.9명이다.³⁵⁾ 소년원학교의 학생수는 2023년 일일 평균 260명(서울원 80명, 대구원 50명, 전주원 74명, 안양원 56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기관별로 18.5명(전주원)에서 25명(대구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수치보다 낮은 편이기는 하나 소년원학교의 수용인원은 연중 변동이 크므로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 수치를 웃도는 실정이다.³⁶⁾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23년 일일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였

34)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0).

3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36) 2023년 11월 28일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국 4개 소년원학교의 학생수는 총 344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중학교(초등학생 포함) 27.5명, 고등학교 25.6명으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많다.

을 때 16.3명(서울원 16명, 대구원 16.7명, 전주원 18.5명, 안양원 14명)으로³⁷⁾ OECD에 보고된 2021년 한국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중학교과정 13.3명, 고등학교과정 10.7명인데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³⁸⁾

이러한 수치 외에도 소년원학교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별 교사가 모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수업과 평가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보통교과는 9과목으로 편성된다. 4개 소년원학교에서 교과목별로 전담 교사를 확보하려면 총 36명이 필요하며, 보통교과 중 국어와 한문, 사회와 한국사를 각각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총 28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4개 소년원학교에 총 13명의 전문경력관 교사와 3명의 공무원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 인력에 미치지 못한다. 일반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설된 각 과목을 전담하는 전문 교사 충원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4개 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는 9개 과목별 담당교사가 모두 배치되어 총 36명의 교사가 확보될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9.6명으로 2021년 전국 고등학교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나아가 소년원학교의 적정 교사인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소년원학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다년간의 학업결손이 누적되고 학습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학생이 다수를 이루며 학생 간 수준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가 지금보다 적은 수로 조정되어야 한다. 학급정원의 조정은 소년원학생들의 학업수준과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정교육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비단 정규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지식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학생들이 일반학

37) 2023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1.5명(서울원 19.2명, 안양원 20.8명, 대구원 23명, 전주원 24명)이다. 이 수치는 전국 4개 소년원에 배치된 전문경력관과 공무원 교사만 포함한 것으로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보호직 직원과 유급강사의 수를 포함하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약간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보호직 직원과 유급강사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였을 때 충실한 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교육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8) OECD(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교육기본통계」는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중학교 11.6명, 고등학교 9.8명으로 집계하였는데, 이 수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기간제 교사 포함) 외에도 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 등을 포함한다. OECD 자료는 수업담당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

교 재학 중에 경험하지 못했을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맺음을 통해 품행 교정과 개선의 동기 부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소년원학교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교사와 각 학생 간 밀도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가 소규모로 편성되는 것이 적합하다.

장기적으로는 각 소년원학교에 과목별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전담하는 교사 2인이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현재 전문경력관 및 공무원 교사들은 배치된 각 기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맡아 해당 과목의 수업 진행과 평가 등의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다. 전문 교사 인력이 충원되어 각 기관에 과목별로 2명의 교사가 배치된다면 교재연구 및 평가에 있어 상호협력이 이루어져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병가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대체가 용이하므로 교육공백과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2) 교육청 교사 인력 지원

소년원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전담할 전문경력관 교사를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학생 비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경력관 충원이 단기간에 달성되기 쉽지 않으므로 우선 외부 인력 지원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각 발의안은 보호소년법 제29조에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 2023. 4. 6.) 또는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21. 12. 17.)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은 교육부·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과과목 수업과 평가 등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파견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교육청의 교사 인력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퇴직교원의 교과활동 지원을 받는 방안이다. 이는 2023년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된 부산소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퇴직교원 인력풀에 등록된 퇴직교사 중 희망자를 섭외하여 부산소년원 위탁교육에 필요한 국어와 국사 수업을 담당할 퇴직교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둘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의한 파견근무 형식으로 교원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이다. 이는 일반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를 소년원학교에 파견하는 것이므로 퇴직교사를 초빙강사로 활용하는 방안과 달리 관계 부처간의 다각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무부와 교육부·교육청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파견근무 형식으로 교원인력 지원을 받게될 경우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 우선, 교육청의 교사 파견은 당사자의 자발적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소년원학교 파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견시 근무 조건 등에 대한 협의가 섬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소년원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1년 중 방학 기간이 2주에서 20일 이내로 매우 짧다. 또한 현재 소년원학교에서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들은 교과교육 이외에도 담임교사를 겸하여 생활관에서의 관리를 비롯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원학교의 운영방식은 교원의 파견 지원을 유도하는 데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원학교 교원 파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년원학교의 학사일정을 수용과 교정교육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한에서 일반 학교와 유사하게 구성하는 등 운영방식의 변경과 교과과목 담당 교사의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년원학교는 통합학급이 운영되는 가운데 입교와 출원, 기관간 이송 등 학생의 이동이 많아 학급 편성이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담당 학생의 수준 파악 및 교과과정 재구성을 위한 연구가 보다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비롯하여 일반학교 학생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 소년원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있어 교사의 경험축적과 적응에 필요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소년원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 파악과 그에 맞는 수용내용 구성 및 운영방식을 찾아가는 데 2~3년 가량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청에서 교원파견 형식으로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고려하여 파견기간이 정해져야 한다.

그밖에 교육청에서 교사파견이 이루어질 경우 소년원학생 관리와 관련된 권한 부여에 대한 논의와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파견교사는 법무부 소속이 아니므로 감호권 부여가 어려우므로 수업 중 교실에 감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 외에 교실 내 질서유지와 학생 관리의 수단인 상벌점 부여 권한을 파견교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교사의 전문성 활용 강화

1) 수용과 교육 관련 업무 분리

2019년 교원 자격이 있는 전문경력관을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으로 채용·배치한 이후 수업내용과 교과 지도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2019년 이전에 보호직 공무원이 교과수업을 담당하면서 전공 관련성을 고려하여 담당과목이 정해지더라도 교직 경험이 없어 충실한 수업진행이 어려웠던 것과 달리 전문경력관 교사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던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직 경험이 있는 전문경력관 교사 채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년원학교는 수용보호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경력관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은 교육 영역에 있다. 따라서 소년원학교의 교육기능 강화라는 전문경력관 채용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경력관 교사들이 교수법 연구와 교재개발 등 교육 관련 업무에 전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전문경력관 교사들은 대부분 담임교사를 겸하면서 담당 과목 수업 외에도 학생들의 감호, 생활관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문경력관 교사들은 교과수업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수용보호와 교육 업무가 분리되지 않은 채 교사들이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부담하면서 기관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감호 등 수용 업무에 투입됨으로써 교육과정의 개발과 충실한 운영을 위한 노력은 뒤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직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문경력관 채용의 목적인 소년원학교의 교육 기능 강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년원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원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실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수용보호와 교육이라는 소년원학교의 두 가지 기능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교과교육 담당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전문경력관 교사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담당 교과수업 외 시간의 감호나 생활관 지도 업무를 대체할 보호직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교과과목 담당 교사들이 교재개발, 교수법 및 수업 연구, 학생 평가 및 학업 지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장기적으로 직무소진을 방지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원 직무연수 제공

보호소년법 제30조는 소년원학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채용된 전문경력관 교사들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원 직무연수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교원 직무연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37조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자격 취득과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담겨있다. 연수 대상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제3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필요한 경우 전항에 따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경력관이나 보호직으로서 교과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교육공무원은 아니나 소년원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설치되

어 있다는 점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교원 직무연수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2023년 소년원학교에서 기초학력증진 시범운영이 이루어지면서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학습 콘텐츠를 개발한 충남대학교에서 4개 소년원학교 기초학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가 실시된 바 있다. 그 외에도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소년원학교 교사들에게 교육공무원인 교원 대상 직무연수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육직무 수행능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⁹⁾

2. 기초학력교육 운영 개선

가. 소규모 학습지원교육반 편성

교육부에서 마련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 특수요인이 있거나 다문화, 탈북, 건강상 장기결석 등 취약 요인으로 인하여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년원학교의 경우 학업결손이 누적되는 등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특성이 있다. 또한, 9호 처분자의 경우 수용기간이 6개월 이하로 짧기 때문에 장기적인 학습지원교육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보다 집중적인 단기간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소년원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지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에 실시된 소년원학교 기초학력증진 시범운영 방식과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3년도에는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보정학습 대상 학생을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향후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미도달 학생 가운데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 기간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과 도달 학생 모두를

39)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은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의 종류로 ① 교원능력개발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교원 대상 직무연수, ② 2년 이상 휴직후 복직하려는 교원 대상 직무연수, ③ 그밖에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으로 집합교육 방식으로 보정학습을 실시한 기관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도달 학생에게는 불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한편 미도달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여력이 부족하여 학습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분리하여 보정학습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정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교육반을 편성할 때 개별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진단평가 결과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 간에도 미도달 정도의 편차가 크고 개별 학생에 따라 특히 취약한 영역과 원인이 다르므로 기초학력 학습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지원교육반은 각 소년원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학급당 최대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편성하여 적절한 교사-학생 비율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와 학생의 1:1 맞춤형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등 소그룹 수업과 개별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 대상학생 평가 및 선정 방법 개선

학습지원교육반을 편성할 때 대상학생 선정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개발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단위학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절차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교사의 관찰, 면담 결과 등을 통해 후보군 구성(1단계), 학습저해요인(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검사도구를 선택하여 진단(2단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3단계)하는 3단계를 거치도록 하되 필요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 기관에 심층진단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초학력 진단검사 외에도 개별 학생의 학습저해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하여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높고 현재 기관의 인력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개별 학생의 학습저해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대상학생을 선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소년원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도구는 읽기, 쓰기, 기초수학 3개 영역 각 20문항

내외로 구성된 검사지로 지필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종의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의욕과 동기가 낮은 소년원학생들이 모두 진단검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평가의 정확성과 적절한 학습지원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과 선정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한 각종 검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가능한 한 파악하고 보호기간 및 기관이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습지원교육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국내문헌

1) 단행본

임현묵·박환보 (2018). 『한국사회와 지속가능 발전목표 4: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논문

김호중 (2004). “특성화 학교 체제도입 전후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주영·강대중 (2019). “판결문을 통해 본 수용자 학습권 분석”, 『교정연구』, 29(4), 131-156.

이나현 (2021). “소년원 교과교육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정희철 (2013). “소년법의 소년보호이념으로서 교육사상”, 『법학연구』, 20(1), 489-515.

최영신 (2003). “소년원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1(2), 155-174.

한양선 (2015). “보호소년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8(2), 65-87.

황인국 (2005).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연구보고서

박선영 (2021). 『소년원생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 연구 - 초·중등교육 법상의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 국외문헌

1) 단행본

- Davis, L. M., Bozick, R., Steele, J. L., Saunders, J., & Miles J. N. V. (2013).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education: A meta-analysis of programs that provide education to incarcerated adults*. RAND Corporation.
- _____. Steele, J. L., Bozick, R., Williams, M. V., Turner, S., Miles, J. N. V., Saunders, J., & Steinberg, P. S. (2014). A Systematic Review of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Incarcerated Juveniles. In *How Effective Is Correctional Education,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pp.21-56). RAND Corporation. <http://www.jstor.org/stable/10.7249/j.ctt6wq8mt.11>

2) 논문

- Chen, C., Lee, S. Y., & Stevenson, H. W. (1995). Response style and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rating scales among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6(3), 170-175.
- Chitsabesan, P., Bailey, S., Williams, R., Kroll, L., Kenning, C., & Talbot, L. (2007). Learning disabilities and educational needs of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children's services*, 2(4), 4-17.
- Chung, H. L., Mulvey, E. P., & Steinberg, L. (2011). Understanding the school outcomes of juvenile offenders: An exploration of neighborhood influences and motivational resour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1025-1038.
- Cruise, K. R., Evans, L. J., & Pickens, I. B. (2011). Integrating mental health and special education needs into comprehensive service planning for juvenile offenders in long-term custody setting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1), 30-40.S.
- Ghazinoory, S., Abdi, M., and Azadegan-Mehr, M. (2011). "SWOT Methodology:

- A State-of-the-Art Review for the Past, A Framework for the Future”,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12(1), 24-48.
- Greenwood, P. (2008).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juvenile offenders. *The future of Children*, 18(2), 185-210.
- Sullivan, K. (2018). Education systems in juvenile detention centers. *Brigham Young University Education and Law Journal*, 2018(2), 71-100.
- Vacca, J. S. (2008). Crime can be prevented if schools teach juvenile offenders to rea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9), 1055-1062.
- Williams, R. M. C. (2008). The status and praxis of arts education and juvenile offend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59(2), 107-126.
- Zabel, R., & Nigro, F. (2007). Occupational interests and aptitudes of juvenile offenders: Influence of special education experience and gender.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58(4), 337-355.
- Zabel, R. H., & Nigro, F. A. (2001). The influence of special education experience and gender of juvenile offenders on academic achievement scores in reading, language, and mathematics. *Behavioral Disorders*, 26(2), 164-172.

3. 기타

- 법무부,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 및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권고”(2021. 2. 17.자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view.do;jsessionid=cSikuss6GYgroKYM1LVW8cNgshEKUCFK8IP6SOV4.wizard-12-67vrw?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zNDEzJTJGYXJ0Y2xWaWV3LmRvJTNG>. 최종접속일 2023. 11. 15.)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6191>, 최종접속일 2023. 11. 15.)
- 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01). *Annual Report: Abandoned in the Back*

Row: New Lessons in Education and Delinquency Prevention (Overview)
(https://www.njjn.org/uploads/digital-library/resource_118.pdf, 최종접속일, 2024. 1. 29.).

Development Services Group, Inc. (2015), “Protective Factors Against Delinquency,” Literature review.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Protective%20Factors.pdf>, 최종접속일 2023. 11. 15.).

Development Services Group, Inc. (2019), “Education for Youth Under Formal Supervis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Literature review.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ttps://ojjdp.ojp.gov/model-programs-guide/literature-reviews/education_for_youth_under_formal_supervision_of_the_juvenile_justice_system.pdf, 최종접속일 2023. 11. 15.).

Lipsey, M.W., Howell, J.C., Kelly, M.R., Chapman, G., and Carver, D. (2010),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Justice Programs.” Center for Juvenile Justice Reform at Georgetown University.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 최종접속일 2023. 11. 15.)

RAND Corporation. (2013).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Prisons Reduces Recidivism, Improves Job Outlook.”(<https://www.rand.org/news/pres/2013/08/22.html>, 최종접속일 2023. 1. 29.)

Abstract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Reform to Fully Guarantee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in Juvenile Detention Centers

Taegyung Gahng and Jin You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for students in juvenile detention schools, as guarante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udy proposes systematic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 inadequate education currently offered to juveniles under deten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current policy environmen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taff of juvenile detention schools, including teachers, an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s Juvenile Protection Department.

The findings identified strengths, such as the appointment of specialized career officers for curriculum education and opportunities for multi-agency cooperation systems. However, weaknesses and risks were also revealed, including a lack of teaching staff and budget constraints, as well as low learning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mong students. Consequently, the study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that include amendments to laws related to juvenile justice and education, enhancement of teaching staff and their professionalism, and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basic education programs.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establish a specific and practic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for students in juvenile detention schools by

84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legislating the legal status of these schools and principles for educational provision, enhancing the quality of curriculum education through additional recruitment and training of specialized teachers, and organizing small-scale, individualized learning support classes to promote students' basic education.

연구총서 23-AB-09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발행 | 2024년 1월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하태훈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7,000원

인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9-11-91565-93-5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